

#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교육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20.7.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교육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산학협력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산학협력 교육 및 非R&D 사업 발굴
2.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3. 산학협력 교육 및 非R&D 사업 관리
4. 산학협력 교육 및 非R&D 사업 참여기업체 구축 및 관리
5. 기타 산학협력 교육 및 非R&D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

제3조(조직) ①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둔다.

- ② 센터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산학협력 교육 및 非R&D 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에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둔다.
- ④ 센터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팀장 및 직원을 둔다.

제4조(산학협력교육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 및 산학협력 교육 및 非R&D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교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산학협력교육센터장, 인재개발본부장,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산학협력교육센터장이 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폐
2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기타)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20.7.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